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8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관리체계 확립

나.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소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수정(안 제8조)

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안 제9조)

- 학교장이 수립하는 교육안전 이행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으로 수정
- 교육장 및 직속기관 장이 수립하는 교육안전 이행계획 ⇒ 교육안전 시행계획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 제25조

o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o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o 입법예고(2021. 4. 16. ~ 5. 6.)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o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별첨 4)

o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함(별첨 5)

o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시행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로, “이행계획을 보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제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이행계획”을 “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필요하다고”를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매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삭 제>
② 제1항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의 세부집행계획 중 교육안전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② <삭 제>
③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 종합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 ----------보고----------
④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기초로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생략)	제12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계획----------.
제15조(교육안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및 권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육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교육안전위원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에 교육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교육행정6급 심혜진(02-6973-9883)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당 없음	

【별첨 4】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입안주관부서	정책안전기획관	통보일	2021.5.3.

관 련 조 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8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 동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이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종류와 시기를 바르게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교육010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심혜진	전화번호	02-6973-98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안전기획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소영/02-399-9675)

정책안전기획관장 귀하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당부서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	직급	지방교육 행정주사	성명	심혜진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됨. – 개정안의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금지 및 학생참여원칙을 준수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7】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 6. 8.]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 12. 3.>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